

2026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실시 안내

2026. 5.

국회 의정연수원

2026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실시 안내

1. 목 적

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과 입법 과정, 법제실무, 법률안 심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과 실습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

2. 지원자격 및 인원

- 지원자격 :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
- 선발인원 : 70명 이내

3. 수습기간 및 장소

- 수습기간 : 2026. 6. 29.(월) ~ 7. 10.(금) [2주간, 80시간]
- 장 소 : 국회의정관 105호

4. 수습과정 운영 및 평가

- 강의 및 분임별 실습활동으로 구성
- 수습 종료 후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학교에 평정표 송부

5. 지원서 제출

- 제출방법 : 수습 희망자는 [붙임 1]의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
- 문 의 처 : 의정연수원 교육연수기획과(02-6788-3683)

6. 수습 일정(안)

▣ 제1주차

요일 시간	6. 29.[월]	6. 30.[화]	7. 1.[수]	7. 2.[목]	7. 3.[금]
09:00 ~09:30	출석 확인 및 안내				
09:30 ~ 12:00	과정안내 (09:30~10:00)	법제방법론 (법제실 실무)	법제실무실습 과제 발표 및 강평	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(위원회 실무)	법률안 검토보고서 발표 및 강평
	입교식 (10:00~10:20)				
	분임구성 및 분임장 선출 (10:20~11:20)				
12:00 ~13:30	점 심				
13:30 ~ 17:30	국회 조직과 기능 (13:30~15:00)	법제실무실습 (분임별 과제)	상임위원회 업무의 이해와 역할 (13:30~15:20)	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(분임별 과제)	체계자구심사 방법론 (법사위 실무) (13:30~14:30)
	입법과정론 (15:10~17:30)		국회 참관 (본회의장· 상임위 회의장) (15:30~17:30)		[특강] 국회 고위공무원 (14:40~15:40)
					법조인 출신 국회 직원과의 대화 (16:00~17:30)

※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▣ 제2주차

요일 시간	7. 6.(월)	7. 7.(화)	7. 8.(수)	7. 9.(목)	7. 10.(금)
09:00 ~09:30	출석 확인 및 안내				
09:30 ~ 12:00	외국법률 자료조사 방법	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발표 및 강평	조사회답방법론 (입법조사 실무)	[토론] 발표 및 강평	국회박물관 참관 (09:30~11:00)
					수료식 (11:10~)
12:00 ~13:30	점 심				
13:30 ~ 17:30	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검토 현황 소개 (13:30~15:20)	국제 의회외교 활동 소개 (13:30~14:20)	[토론] 사법과 민주주의	국가재정과 법안비용추계 업무의 이해 (13:30~15:30)	
		행정입법검토 이론과 실제 (14:30~16:20)			
	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토론 (분임별 과제) (15:30~17:30)	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의 대화 (16:30~17:30)		법조인 출신 국회 보좌진과의 대화 (16:00~17:30)	

※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7. 학교별 실무수습인원 배정(안)

(단위: 명)

학 교 명	정 원	2026년도 수습인원 배정(안)
강원대학교	40	2
건국대학교	40	2
경북대학교	120	4
경희대학교	60	2
고려대학교	120	4
동아대학교	80	2
부산대학교	120	4
서강대학교	40	2
서울대학교	150	3
서울시립대학교	50	2
성균관대학교	120	4
아주대학교	50	2
연세대학교	120	4
영남대학교	70	2
원광대학교	60	3
이화여자대학교	100	4
인하대학교	50	2
전남대학교	120	4
전북대학교	80	2
제주대학교	40	2
중앙대학교	50	2
충남대학교	100	4
충북대학교	70	2
한국외국어대학교	50	2
한양대학교	100	4
25개교	2,000	70

* 학교별 실무수습 인원은 각 학교 정원 및 전년도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배분함

* 학교별 배정 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, 예비신청인원 간 우선순위 표기 요망